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상속 및 양도·양수 관련 유권해석 알림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상속 및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7항은 상속인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상속신고를 하고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해주겠다는 규정입니다.
4. 따라서 상속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양도하여야 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속신고 및 타인에게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5. 만약 피상속인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때 상속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기준 및 자격기준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2.개별기준 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7호 나목)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물류과장), 인천광역시(택시화물과장), 대전광역시(운송주차과장), 대구광역시(택시물류과장), 광주광역시(대중교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통과장), 울산광역시(버스타็กซี่과장), 강원도지사(교통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생활경제교통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기도지사(택시교통과장), 부산광역시(택시운수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전결 2019.8.6.

협조자

시행 도시교통과-3012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 / http://www.molit.go.kr
시교통과

전화번호 044-201-4771 팩스번호 044-201-5581 / csw7168@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